

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실무편람 ①

I.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내용

1. 경 위

- '93년도부터 과대포장 및 난분해성 포장재(합성수지)로 인한 환경 영향을 줄이고자,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재질로 대체하는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정책을 추진
 - 과대포장규제('93), 포장재질(PVC) 규제('98.1), 가전제품 완충재('95.9) 및 합성수지 포장재 연차별 감량화('98.1)
- '02.2.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하위 법령 및 고시, 예규 등을 전면 개정
 -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법률체계를 정비하고, 그 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

2.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내용

가.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개정 내용

- 법률 제2조(정의) 제9호의 규정으로 "포장재"의 용어정의를 규정
 - "포장재"는 제품의 수송·보관·취급·사용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·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사용된 재료·

용기 등을 뜻한다

- 법률 제9조(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) 제1항의 규정으로 제품의 제조자 등이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과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키도록 규정·종전 법률 제15조에 규정에서는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기준만을 명시
- 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2규정으로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과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제품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하고, 세부적인 기준과 연차별 줄이기 목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
- 종전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"연차별 감량화 목표"를 "연차별 줄이기 기준"으로 변경하여 법률에 명기
- 종전 감량화 방법에 환경친화적인 재질대체 이외에 중량 감축 및 회수 처리·재활용도 포함되어 이행 실적 파악이 곤란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, 재활용이 EPR로 전환됨에 따라 줄이기 방법을 재질대체, 사용량 감량으로 규정하고, 재활용·소각처리를 제외

나.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

개정 내용

-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으로 "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하는 제품은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"으로 규정
- 종전 규칙으로 폴리비닐클로라이드(PVC) 재질을 사용한 첩합, 코팅한 포장재 및 수축포장재는 PVC 재질 이외의 재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상위 법령에 근거를 마련
-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으로 "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하는 제품은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"으로 규정
- 종전 규칙으로 폴리비닐클로라이드(PVC) 재질을 사용한 첩합, 코팅한 포장재 및 수축포장재는 PVC 재질 이외의 재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상위 법령에 근거를 마련
-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으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하는 대상제품의 종류를 규정
- 종전에는 규칙으로 제품 종류와 포장방법 기준을 규정하던 것을 제품 종류는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포장방법 기준은 규칙으로 규정
- 대상제품 중 종전 "화장품(세제류 포함)"을 "화장품류(방향제를 포함한다)" 및 "세제류"로 세분화하여 규정
- "종합제품"의 정의를 "1회 이상 포장한 최소판매 단위의 제품과 1회 이상 포장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을 함께 포장한 것을 말한다"라고 규정
-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으로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하는 제품의 종류와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규정
- 종전에는 규칙으로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 대상제품과 목표율을 규정(대상사업자 범위 미설정)하던 것을 대상제품과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상위법령으로 규정
-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대상제

- 품을 계란, 사과·배, 청과·축산·수산부류, 면류,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류, 오디오·비디오 응용기기, 정보사무기기 등 5개 품목으로 조정
- 종전 감량화 대상제품 중 친환경재질 대체가 곤란한 음료, 제과류, 가공식품, 화장품류 등에 사용되는 받침류, 용기류 및 필름류를 줄이기 대상제품에서 제외하고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로 전환
 - EPR 적용시 회수·재활용이 비교적 용이한 용기류는 2003년부터 적용하고 필름류 등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4년부터 적용
-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용 완충재 연차별 줄이기 대상제품을 종전 6대 가전제품(컴퓨터, 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, TV, 전자레인지)에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류, 오디오·비디오응용기기, 정보사무기기(81개 품목)로 변경
 - 종전 대상제품인 "6대 가전제품인 것으로 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제품"은 대형제품으로 제품의 안전성 등의 문제로 포장용 완충재의 재질대체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, 대상제품을 소형·경량제품으로 전환
-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
-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사업자를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대상시설(사과·배 받침접시), 매장면적 165㎡이상 판매업소(농·축·수산부류 받침접시) 등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도점검 등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
- 종전 감량화 대상사업자의 범위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규모 영세 양계 및 과수농가까지 포함되어 업소파악이 곤란 하고, 이행실적 확인에 어려움 초래했던 문제점을 개선

다. 제품의포장재질·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

규칙 개정 내용

- 규칙 제3조(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)의 규정으로 PVC 포장재 사용금지 대상을 확대
- PVC는 다이옥신 배출 등 환경에 영향이 크고, 다른 재질과 혼합될 경우 재활용을 저해함에 따라 가정에서 주로 배출되는 포장재(계란·메추리알, 튀김·식튀김식품·김밥류·햄버거류·샌드위치류 포장재)에 대하여 PVC 사용을 금지
- 규칙 제4조(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) 및 별표1의 규정으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을 일부 조정
- 화장품에 포함되어 있는 방향제 중 향수류는 제품 특성을 고려 하여 포장공간비율 적용 배제
- 제과류 중 데커레이션 케이크의 장식 등에 따라 포장공간비율이 변동됨에 따라 포장공간비율을 종전

20% 이하에서 35%이하로 완화

- 종합제품의 받침접시·포장완충재 재질에 따라 포장공간비율을 가감하여 포장재의 환경친화적인 재질 대체 유도
 - 받침접시·포장완충재로 사용된 재질에 따라 포장공간비율 25%를 기준으로 복합합성수지, PVC, 합성섬유 재질 사용시
 - 5%, 단일 합성수지재질 사용시 0%, 종이재질 사용시 +5%를 가감
-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대상품목별로 재질대체 현황과 이행 가능성여부를 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기준을 재설정
- 계란난좌 80%→60%이상, 계란팩 80%→35%이상, 사과·배 받침 접시 60%→15%이상, 농·축·수산부류 받침접시 60%→10%이상, 면류 용기

3. 주요 법령 개정내용 요약 대비표

구 분	종 전	현 행
용어정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감량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질대체, 사용량 감량, 재활용, 회수·소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줄이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질대체, 사용량 감량 ※ 사용량 감량은 전년도대비 감량만을 인정
포장재질에 관한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PVC재질 포장재 사용금지 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축포장재, 첩합·코팅한 포장재 ● EPS 포장재 사용금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완구·인형·종합제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PVC재질 포장재 사용금지 대상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축포장재, 첩합·코팅한 포장재 - 계란, 메추리알, 튀김식품, 김밥류, 햄버거, 샌드위치류 ● EPS 포장재 사용금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완구·인형·종합제품
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포장공간비율·포장횟수 적용 대상 제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개 제품군에 적용 ● 포장공간비율 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과류 20%이하 ● 포장재질별 공간비율 가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종이재질 사용시 포장공간비율에 +10% 인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포장공간비율·포장횟수 적용 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7개월 제품군에 적용(방향제 추가) ● 포장공간비율 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과류 20%이하(케이크 35%이하) - 방향제 10%이하(향수류 제외) ● 포장재질별 공간비율 가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종이재질 사용시 포장공간비율에 +5%를 인정 - 복합합성수지, PVC, 합성섬유재질 사용시 포장공간비율에 -5%를 인정

구 분	종 전	현 행
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감량화 대상 제품의 종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란받침 · 팩 - 사과 · 배 받침접시 - 컵라면 용기 - 화장품 · 잡화류 · 종합제품 받침접시 - 문구류 · 신변잡화류 · 의약부의품 · 의류포장제 ● 연차별 감량화 사업자의 범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모든 생산자 ● 연차별 감량화 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란난좌 : 80% 이상 - 계란팩 : 80% 이상 - 1차식품 60% 이상 - 컵라면 용기 60%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줄이기 대상 제품의 종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란받침 · 팩 - 사과 · 배 받침접시 - 면류 용기(우동 등 포함) - 농 · 축 · 수산부류 받침접시 - 제외(EPR 적용) - 제외(EPR 적용) ● 연차별 줄이기 사업자의 범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란난좌 · 팩 : 오분법에 의한 신고대상시설 - 사과 · 배 받침접시 : 농안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- 농 · 축 · 수산부류 받침접시 : 면적165m' 이상 판매업소 ● 연차별 줄이기 기준(2003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란난좌 60% 이상 - 계란팩 35% 이상 - 사과 · 배 받침접시 15% 이상 - 농 · 축 · 수산부류 받침접시 10% 이상 - 면류 용기 20% 이상

구 분	종 전	현 행
포장용 합성수지재 완충재연차별 줄이기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적용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컴퓨터, 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, TV, 전자레인지(6개 품목)로 용적 3만cm³이상 ▶ 대상 사업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간2만대이상 제조자 ▶ 연차별 감량화 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일정비율만큼 사용량 감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기업 50%이상 ('02이후) - 중소기업 30%이상('02 이후) ※ 기준 적용 : 1994년도 사용량 대비 감량 실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적용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류, 오디오 · 비디오응용기기, 정보사무기기(81개 품목) ▶ 연차별 줄이기 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제품규모에 따라 연차별로 발포폴리스티렌 재질사용 : '04년 2만cm³이하, '06년 3만cm³이하, '08년 4만cm³이하

60%→20%이상

-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포장용 완충재에 대한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종전 일정비율(%)을 감량화 하도록 하던 것은 일정규모(포장용적) 이하의 대하여 연차별로 EPS 재질의 사용을 금지토록 변경
- '04년 : 포장용적 2만cm³이하 제품, '06년 : 포장용적 3만cm³이하 제품, '08년 : 포장용적 4만cm³이하 제품은 발포폴리스티렌 재질 포장용 완충재 사용금지
- 규칙 제9조(포장재 연차별 줄이기의 예외)의 규정으로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 사유 등을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예외 규정 신설
- 포장용기 재사용이 활발한 제품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게 리필용기 생산비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
 - 삼푸 · 린스류 : 100분의 20이상 → 100분의 25이상
 - 물티슈류 : 100분의 20이상 → 100분의 60이상
 - 분말커피류 : 100분의 10이상 → 100분의 70이상

4. 고시 및 예규 개정 목적 및 주요 내용

가.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 방법

(환경부고시2003-91호, 2003.5.21)

- 목 적
 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거 재활용이 곤란한 포장재질(PVC) 사용여부와 제품의 과대포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,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기에 앞서 간이로 측정하는 방법을규정하여 자의적인 판단으로 검사명령을 남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
- 주요 내용
 - 폴리비닐클로라이드(PVC) 재질여부 간이측정방법을 규정
 - 포장재에 불꽃을 접근시켜 연소특성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PVC 재질여부를 판단

- 착화성, 자기 소화성, 불꽃의 특징, 연소가스의 냄새, 구리선과의 불꽃반응으로 PVC 재질여부를 판단

※ 포장재질 검사대상 포장재의 범위
:PVC 수축포장재, PVC를 첩합 또는 코팅한 포장재, 포장용기 (계란 · 메추리알 · 튀김식품 · 김밥류 · 햄버거류 · 샌드위치류)

○ 제품의 과대포장여부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을 규정

- 검사대상 제품의 종류 및 특성을 확인하여 적용대상 포장공간 비율 및 포장횡수 기준을 확인

- 포장용적, 제품체적, 필요공간용적을 산출한 후 포장공간비율 기준에 적합하지 여부를 판단

※ 과대포장 검사대상 제품의 범위
:음식료품류, 화장품류, 세제류, 잡화류(완구인형류 · 문구류 · 신변 잡화류), 의약외품류, 의류, 종합제품

나.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

(환경부고시 제2003-93호, 2003.5.21)

- 목 적
 - 제품의포장재질 · 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 - ※ 연차별 줄이기 대상 포장재 : 계란난좌 · 팩, 사과 · 배 받침접시, 청과 · 축산 · 수산부류 받침접시, 라면용기, 전기용품 포장용 완충재
- 주요 내용
 - 제품을 제조 · 수입 · 판매하는 자(제조자등)로 하여금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자체계

- 회을 수립하도록 규정함(제3조)
-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조자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(제4조)
 - 계란난좌·팩 줄이기 대상 사업자의 범위에 계란집하장을 포함하고, 사과·배 받침접시 줄이기 대상 사업자의 범위에 도매시장 법인, 시장도매인 등을 포함
-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방법을 재질대체와 합성수지 포장재 사용량 감량으로 한정하고 줄이기 기준 산정방법을 규정함(제7조)
- 제조자등에게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을 작성·비치토록 하고 자치단체에서 이행실적을 요구할 경우 제출토록 규정함(제8조)
- 전기용품 중 규제대상 이외의 제품(규제대상 이상~용적 10만㎤이하)에 대하여도 발포폴리스티렌 이외의 포장용 완충재 사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함(제10조)

- 하지 아니 하여도 되는 경우를 규정함(제5조)
- 포장검사 성적서를 20일내에 제출토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토록 규정함(제6조)
-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,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위반한 제조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점검 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도록 함(안 제7조, 제10조)
- 연차별 줄이기 대상 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고,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 확인 절차 등을 규정함(제8조 내지 제10조)
- 제조자등에 대한 지도·점검을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, 구체적인 지도·점검 방법 및 요령, 지도·점검 결과의 처리 및 보고 등을 규정함(제14조 내지 제19조)

다. 포장폐기물의발생억제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

(환경부예규 제2003-229호, 2003.6.2)

□ 목 적

-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제품의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

□ 주요 내용

-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여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수축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(제3조 별표1)
-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(제4조 별표2) 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장검사명령을 하도록 하고, 포장검사 명령을